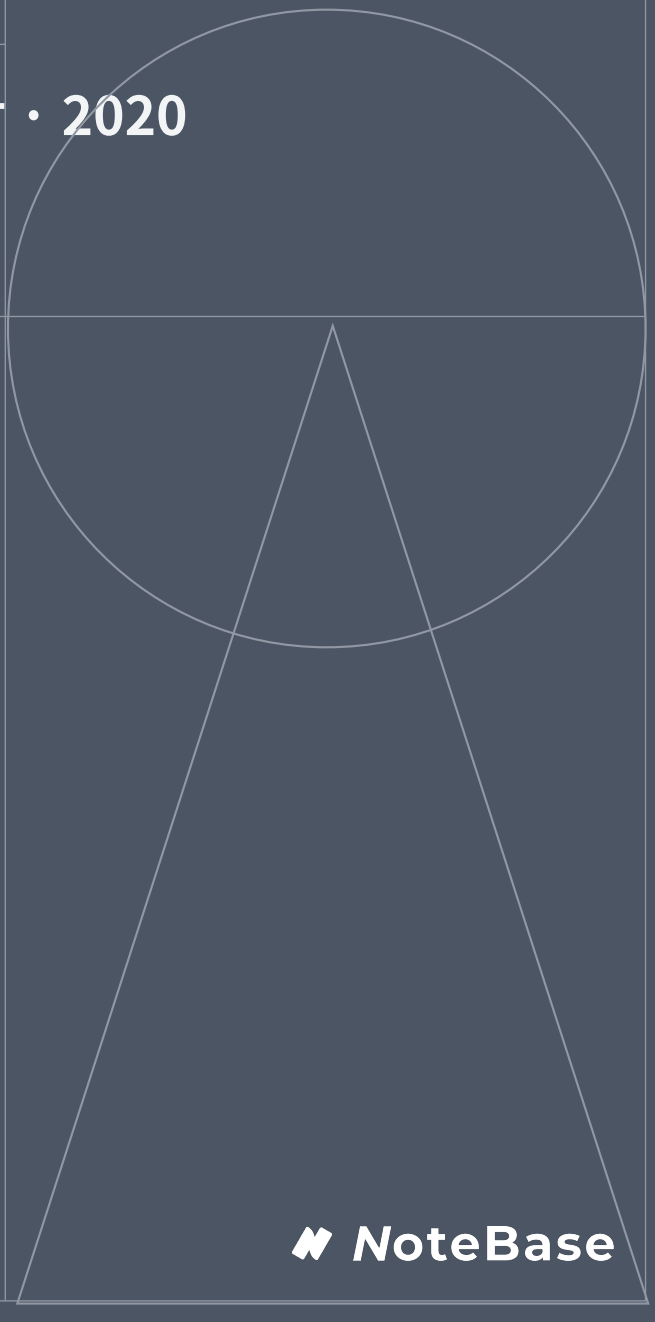
# 기출OX 해설집

공무원/국가직/7급 · 무역학 · 2020



NoteBase

# 기출OX 해설집

## 공무원/국가직/7급 · 무역학 · 2020

**공무원/국가직/7급 · 무역학 · 2020**

**문 1. 무역계약의 법적 성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쌍무계약은 양 당사자가 동시에 채무를 부담하는 것으로 매매계약이 성립되면 매도인은 물품인도의무를 부담하고, 매수인은 대금지급의무를 부담한다.

② 낙성계약은 일방당사자의 청약에 대하여 상대방이 승낙함으로써 성립되는 계약으로 요물계약이라고도 한다.

③ 유상계약은 서로 대가관계에 있는 재산상 급부 등을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계약으로서 무상계약과 대응되는 개념이다.

④ 불요식계약은 특별한 형식 없이 구두나 행위에 의하여도 의사의 합치만 확인되면 계약이 성립된다는 것이다.

**정답 2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무역계약의 법적 성격을 구분하는 기본 개념인 쌍무계약, 낙성계약, 유상계약, 불요식계약의 정의와 대비 개념을 정확히 구별하는지를 묻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쌍무계약은 당사자 쌍방이 서로 대가관계에 있는 채무를 부담하는 계약이다.
낙성계약은 청약과 승낙의 의사표시 합치만으로 성립하는 계약이고, 요물계약은 여기에 더해 목적물의 인도 등 현실적 급부가 있어야 성립하는 계약이다.
유상계약은 서로 대가관계에 있는 재산상 출연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이고, 무상계약은 한쪽만 출연하거나 대가관계가 없는 계약이다.
불요식계약은 법이 특별한 방식이나 형식을 요구하지 않아 의사합치만 있으면 성립하는 계약이다.

NoteBase

### 선지별 해설

① O
쌍무계약은 양 당사자가 서로 채무를 부담하는 계약이다. 매매계약에서는 매도인이 물품인도의무를, 매수인이 대금지급의무를 부담하므로 설명이 옳다.

② X
앞부분의 "일방당사자의 청약에 대하여 상대방이 승낙함으로써 성립되는 계약"이라는 설명은 낙성계약의 내용에 맞다. 그러나 "요물계약이라고도 한다"는 표현이 틀린 부분이다. 올바르게는 "낙성계약이라고 한다"가 맞고, 요물계약은 의사합치만으로는 부족하고 목적물 인도 등 현실의 수수가 있어야 성립한다.

③ O
유상계약은 서로 대가관계에 있는 재산상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계약이다. 따라서 무상계약과 대응되는 개념이라는 설명이 옳다.

④ O
불요식계약은 특별한 형식을 요구하지 않는 계약이므로 서면, 구두, 행위 등 방식과 무관하게 의사합치가 확인되면 성립한다는 설명이 옳다.

### 오답 포인트

낙성계약과 요물계약은 서로 대응되는 개념인데, ②는 낙성계약의 정의를 제시한 뒤 명칭만 요물계약으로 바꿔 끼워 넣은 선지이다. 정의와 명칭을 따로 보지 않고 문장 흐름만 따라가면 쉽게 속을 수 있다.

###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계약의 법적 성격 문제는 먼저 성립 요건, 대가관계, 형식 요구 여부를 기준으로 나누면 된다. 의사합치만으로 성립하면 낙성계약, 목적물 인도까지 있어야 하면 요물계약, 서로 대가를 주고받으면 유상계약, 특별한 형식이 필요 없으면 불요식계약으로 판단한다.

### 암기 포인트

낙성은 합치만, 요물은 인도까지, 유상은 대가관계, 불요식은 형식 불요로 정리된다.

NoteBase

**문 2. 환율(exchange rate)의 종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기준환율(basic rate)은 국제결제에서 널리 사용되는 통화와 자국통화 간의 환율로서 외환시세의 기준이 되는 환율이다.

② 매도환율(offered rate)은 외국환은행이 외환을 필요로 하는 고객들에게 판매할 때 적용되는 환율이다.

③ 재정환율(arbitrated rate)은 기준환율을 제외하고 교차환율로부터 직접적으로 산출되는 환율이다.

④ 실질환율(real exchange rate)은 양국 통화 간의 명목환율을 양국의 물가변동으로 조정한 환율이다.

**정답 3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기준환율, 매도환율, 재정환율, 실질환율의 정의와 산출 기준을 정확히 구분하는지를 묻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기준환율은 외환시세의 기준이 되는 대표 환율이다.
매도환율은 은행이 고객에게 외화를 팔 때 적용하는 환율이다.
재정환율은 국내 은행간 외환시장에서 직접 거래되지 않는 통화와 자국통화 간 환율을 기준환율과 교차환율을 이용해 간접적으로 산출한 환율이다.
실질환율은 명목환율에 양국의 물가 수준 변화를 반영해 조정한 환율이다.

**선지별 해설**

① O: 기준환율은 외환시세의 기준이 되는 대표 환율을 말하므로 설명이 맞다. 국제결제에서 널리 쓰이는 통화와 자국통화 간 환율이 다른 환율 산정의 기준이 된다는 점이 핵심이다.
② O: 매도환율은 외국환은행이 고객에게 외화를 판매할 때 적용하는 환율이므로 설명이 맞다. 은행 기준으로 외화를 내어주는 거래라는 점이 판단 기준이다.
③ X: 틀린 표현은 '기준환율을 제외하고'와 '교차환율로부터 직접적으로'이다. 재정환율은 기준환율을 바탕으로 교차환율을 활용하여 간접적으로 산출한다. 올바르게는 '재정환율은 국내에서 직접 거래되지 않는 통화와 자국통화 간 환율을 기준환율과 교차환율을 이용해 간접적으로 산출한 환율이다'가 된다.
④ O: 실질환율은 명목환율을 양국의 물가변동으로 조정한 환율이므로 설명이 맞다. 단순 환산비율이 아니라 물가 수준까지 반영한 상대가격 개념이다.

**오답 포인트**

재정환율과 교차환율을 같은 개념으로 섞으면 ③에 걸리기 쉽다. 교차환율은 원화가 들어가지 않는 외국통화 간 환율이고, 재정환율은 원화와 직접 거래되지 않는 통화의 환율을 기준환율과 교차환율로 재정한 값이라는 점이 다르다.

NoteBase

###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환율 종류 문제는 먼저 누가 거래 당사자인지, 원화가 포함되는지, 산출이 직접인지 간접인지, 물가를 반영하는지의 네 축으로 나누어 판단한다. 은행이 고객에게 파는 환율이면 매도환율이고, 기준환율을 매개로 간접 계산하면 재정환율이며, 물가를 반영하면 실질환율이다.

### 암기 포인트

기준은 대표 환율, 매도는 은행 판매, 재정은 간접 산출, 실질은 물가 반영이다.

NoteBase

**문 3. GATT와 WTO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GATT와 WTO는 법적 구속력을 가진 국제기구이다.

② WTO는 분쟁해결기구(DSB)를 신설하여 GATT체제에 비해 신속하고 효율적인 분쟁해결능력을 갖추게 되었다.

③ GATT체제는 주로 관세인하에 주력하였으나, WTO는 관세인하뿐만 아니라 비관세장벽을 완화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④ GATT체제는 공산품을 중심으로 한 상품무역에 주력하였으나, WTO는 상품뿐만 아니라 서비스무역, 지식재산권무역 등으로까지 그 대상을 확대하였다.

**정답 1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GATT와 WTO의 법적 성격과 규율 범위의 차이를 묻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GATT는 관세와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으로서 상품무역 자유화를 위한 다자간 무역협정이다. 핵심은 국제기구가 아니라 협정 체제라는 점이다.
WTO는 우루과이라운드 결과로 출범한 국제기구로서 다자무역규범을 운영한다. 핵심은 상품무역뿐 아니라 서비스무역과 지식재산권까지 포괄한다는 점이다.
구별 기준은 먼저 협정인지 기구인지, 다음으로 상품 중심인지 규율 대상이 확장되었는지이다.

**선지별 해설**

① X. 틀린 부분은 "GATT와 WTO는 ... 국제기구이다"라는 표현이다. WTO는 국제기구가 맞지만 GATT는 국제기구가 아니라 다자간 무역협정이다. 틀린 표현 → 올바르게는 "GATT는 법적 구속력을 가진 다자간 무역협정이고, WTO는 법적 구속력을 가진 국제기구이다"이다.
② O. WTO는 분쟁해결기구(DSB)를 두고 분쟁해결양해에 따라 패널 설치와 보고서 채택 절차를 제도화하여, GATT 체제보다 분쟁해결이 더 신속하고 예측 가능하게 되었다.
③ O. GATT 체제는 상품무역에서 관세인하가 중심이었고, WTO 체제는 관세 문제뿐 아니라 반덤핑, 보조금, 기술규제 등 비관세장벽에 대한 규율도 강화하였다.
④ O. GATT는 주로 공산품 중심의 상품무역에 초점이 있었지만, WTO는 상품무역 외에 GATS를 통한 서비스무역, TRIPS를 통한 지식재산권 무역까지 포괄하도록 대상이 확대되었다.

**오답 포인트**

1번은 "법적 구속력"이라는 부분이 맞는 요소라서 문장 전체를 맞는 것으로 오인하기 쉽다. 그러나 정답을 가르는 표현은 "국제기구"이고, GATT는 협정이지 기구가 아니라는 점이 함정이다.

NoteBase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GATT와 WTO 비교 문제는 먼저 법적 성격을 본다. GATT는 협정, WTO는 기구로 정리한 뒤, 다음 단계에서 WTO가 서비스무역과 지식재산권까지 규율 범위를 넓혔는지를 확인하면 된다.

**암기 포인트**

GATT는 협정, WTO는 기구이다. GATT는 상품 중심, WTO는 상품+서비스+지재권까지 확장된 체제이다.

NoteBase

**문 4. Incoterms® 2020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FCA 조건에서 운송인은 철도, 도로, 항공, 내수로 또는 이들의 복합방식에 의한 운송을 이행하거나 또는 그 이행을 조달하기로 약정하는 자를 말하며 운송인 또는 운송대리인을 포함한다.

② DPU 조건에서 물품이 매도인에 의해 지정목적지에서 도착운송수단에 실린 채 양하 준비된 상태로 매수인의 처분하에 놓이는 때에 인도한 것으로 본다.

③ FAS 조건에서 매도인은 물품을 선측에 인도하거나 이미 선적을 위하여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하여야 한다.

④ CIP 조건에서 매도인은 협회적하약관의 A약관이나 그와 유사한 약관에 따른 광범위한 담보조건으로 부보할 의무가 있으나, 당사자들은 더 낮은 수준의 담보조건으로 부보하기로 합의할 수 있다.

**정답 2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Incoterms 2020에서 FCA, DPU, FAS, CIP의 인도시점과 보험의무를 정확히 구별하는지를 묻는다.

**핵심 개념**

FCA는 매도인이 수출통관을 마친 뒤 매수인이 지정한 운송인 등에게 물품을 인도하는 조건이다. 키워드는 운송인 인도이다.
DPU는 지정목적지에서 물품을 양하한 뒤 매수인의 처분하에 둘 때 인도하는 조건이다. 키워드는 양하 후 인도이다.
FAS는 매도인이 물품을 선측에 두면 인도한 것으로 보며, 이미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해도 되는 조건이다. 키워드는 선측 인도이다.
CIP는 매도인이 운송계약과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조건이며 원칙적으로 협회적하약관 A약관 또는 그와 유사한 수준의 보험을 부보한다. 다만 당사자 합의가 있으면 더 낮은 수준의 담보도 가능하다.

NoteBase

### 선지별 해설

① O
운송인을 단순히 실제 운송수단을 보유한 자로만 보지 않고, 철도·도로·항공·내수로 또는 이들의 복합운송을 직접 이행하거나 그 이행을 조달하기로 약정한 자로 본다는 취지이므로 옳다.
② X
틀린 부분은 "도착운송수단에 실린 채 양하 준비된 상태"이다.
실제로 DPU는 물품이 지정목적지에서 양하된 후 매수인의 처분하에 놓일 때 인도한다. 실린 채 양하 준비 상태에서의 인도는 DAP에 가깝다.
③ O
FAS는 매도인이 물품을 선측에 두거나, 이미 선적을 위하여 선측에 인도된 물품을 조달하면 된다. 따라서 선측 인도 또는 그와 같은 상태의 물품 조달 의무를 설명한 내용으로 옳다.
④ O
CIP는 매도인이 협회적하약관 A약관 또는 그와 유사한 약관에 따른 넓은 담보조건으로 보험을 부보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당사자 합의가 있으면 그보다 낮은 수준의 담보조건으로 정할 수 있으므로 옳다.

### 오답 포인트

DPU와 DAP의 차이를 양하 전후로 구별하지 못하면 ②에 쉽게 끌린다. DPU는 이름 자체에 Unloaded가 들어가므로 반드시 양하가 끝난 뒤 인도한다는 점이 함정 회피 포인트이다.

###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Incoterms 문제는 각 조건을 운송수단 기준이 아니라 인도시점과 위험이전 시점으로 먼저 나눠 보면 된다. 특히 D계열은 목적지에서 언제 인도되는지, FAS는 선측인지 본선 위인지, CIP는 보험의무가 있는지를 순서대로 확인하면 된다.

### 암기 포인트

DPU는 목적지 양하 후, DAP는 양하 전, FAS는 선측, CIP는 운임과 보험까지 포함이다.

NoteBase

**문 5. 신용장통일규칙(UCP 600)에서 규정하고 있는 보험서류 및 담보범위에 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① 보험증권은 포괄예정보험에 의한 보험증명서 또는 통지서를 대신하여 수리될 수 없다.

② 보험서류가 2통 이상의 원본으로 발행되었다고 표시된 경우, 모든 원본을 제시할 필요가 없으며 한 통의 원본만 제시하면 된다.

③ 보험담보에 관하여 신용장에 아무런 표시가 없는 경우, 보험담보금액은 물품의 FOB 또는 CIF 가격의 110%이어야 한다.

④ 신용장이 통상적 위험 또는 관습적 위험과 같은 부정확한 용어를 사용하는 경우, 보험서류는 부보되지 아니한 모든 위험과 관계없이 수리된다.

**정답 4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UCP 600 제28조에서 보험서류의 인정 범위, 복수 원본 제시 원칙, 최소 담보금액, 불명확한 위험표시의 처리 기준을 정확히 구분하는지를 묻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UCP 600의 보험서류는 보험증권, 보험증명서, 포괄예정보험에 의한 통지서나 선언서와 같이 신용장에서 허용되는 보험서류를 말한다.
복수 원본으로 발행된 보험서류는 원본 전부를 제시해야 한다.
신용장에 담보금액 표시가 없으면 보험금액은 물품의 CIF 또는 CIP 가액의 110% 이상이어야 한다.
신용장이 "usual risks"나 "customary risks"처럼 불명확한 표현을 쓰면, 보험서류는 담보되지 않은 위험이 있더라도 그 이유만으로 거절되지 않는다.

NoteBase

### 선지별 해설

① X
틀린 부분은 "보험증권은 포괄예정보험에 의한 보험증명서 또는 통지서를 대신하여 수리될 수 없다"는 표현이다.
UCP 600은 보험증권만을 고집하지 않고 보험증명서나 포괄예정보험에 따른 선언서도 인정한다. 따라서 특정 형식만 수리되고 다른 형식은 대체될 수 없다고 단정한 서술은 틀리다.

② X
틀린 부분은 "한 통의 원본만 제시하면 된다"는 표현이다.
보험서류가 2통 이상 원본으로 발행되었다고 표시된 경우에는 모든 원본을 제시해야 한다. 복수 원본 표시가 있으면 일부만 제시해서는 부족하다.

③ X
틀린 부분은 "FOB 또는 CIF 가격의 110%"라는 표현이다.
신용장에 보험담보에 관한 표시가 없을 때의 최소 담보금액 기준은 FOB가 아니라 CIF 또는 CIP 가액의 110%이다. 따라서 FOB를 포함시킨 서술은 오답이다.

④ O
신용장이 통상적 위험 또는 관습적 위험처럼 불명확한 용어를 사용하면, 보험서류는 담보되지 않은 위험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거절되지 않는다. 이 선지는 UCP 600의 취지를 그대로 반영하므로 옳다.

### 오답 포인트

수험생은 보험서류의 종류를 보험증권 하나로 좁혀 기억하거나, 최소 담보금액 기준을 FOB와 혼동하기 쉽다. 또 "all risks" 규정과 "usual risks" 규정을 섞어서 보면 ④의 판단이 흔들리기 쉽다.

###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UCP 600 보험서류 문제는 먼저 인정되는 서류 종류를 확인하고, 다음으로 복수 원본이면 전부 제시인지, 담보금액 기본값이 CIF 또는 CIP의 110%인지, 마지막으로 위험표시가 불명확하면 미담보 위험을 이유로 거절하지 않는지를 순서대로 대조하면 된다.

### 암기 포인트

보험서류는 여러 형식이 인정되고, 복수 원본은 전부 제시하며, 무표시면 CIF 또는 CIP의 110%, usual risks는 미담보 위험 불문 수리이다.

NoteBase

**문 6. 무역관련 지식재산권협정(TRIPs)이 보호대상으로 정하고 있는 지식재산권(Intellectual Property Rights)에 해당하는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상표권(trademarks)
ㄴ. 지리적표시권(geographical indications)
ㄷ. 디자인권(industrial designs)
ㄹ. 특허권(patents)

① ㄱ, ㄹ
② ㄴ, ㄷ
③ ㄱ, ㄷ, ㄹ
④ ㄱ, ㄴ, ㄷ, ㄹ

**정답 4번**

**쟁점**

이 문제는 TRIPS 협정이 보호대상으로 규정하는 지식재산권의 범위를 묻는 문제이다. 핵심은 Part II에서 열거한 권리 유형에 상표권, 지리적표시권, 디자인권, 특허권이 모두 포함된다는 점을 구별하는 것이다.

**용어 풀이**

TRIPS 협정 = 세계무역기구 체제에서 지식재산권의 최소 보호기준을 정한 협정이다.
지리적표시권 = 특정 상품이 일정 지역에서 유래하고 그 지역적 특성이 품질이나 명성에 연결될 때 그 표시를 보호하는 권리이다.

**핵심 구분**

TRIPS 협정 Part II는 보호대상 지식재산권으로 상표권, 지리적표시권, 산업디자인, 특허를 모두 포함한다.
따라서 이 문항의 ㄱ, ㄴ, ㄷ, ㄹ은 전부 보호대상이고, 일부만 고른 조합은 모두 틀린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X
- ㄱ의 상표권과 ㄹ의 특허권은 모두 TRIPS 보호대상이지만, ㄴ의 지리적표시권과 ㄷ의 디자인권도 역시 보호대상이다.
- 틀린 표현: ㄱ, ㄹ만 해당하는 것처럼 고른 조합
- 올바른 표현: ㄱ, ㄴ, ㄷ, ㄹ이 모두 해당한다.

② X
- ㄴ의 지리적표시권과 ㄷ의 디자인권은 맞지만, ㄱ의 상표권과 ㄹ의 특허권도 TRIPS가 별도 절로 보호한다.
- 틀린 표현: ㄴ, ㄷ만 해당한다는 판단
- 올바른 표현: 상표권, 지리적표시권, 디자인권, 특허권이 모두 포함된다.

③ X
- ㄱ, ㄷ, ㄹ은 맞는 항목이지만 ㄴ의 지리적표시권도 TRIPS 보호대상이다.
- 틀린 표현: 지리적표시권을 제외한 조합
- 올바른 표현: 지리적표시권까지 포함한 ㄱ, ㄴ, ㄷ, ㄹ 전체가 정답 조합이다.

④ O
- ㄱ 상표권, ㄴ 지리적표시권, ㄷ 디자인권, ㄹ 특허권은 모두 TRIPS 협정 Part II에 규정된 보호대상 지식재산권이다.
- 조합 전체가 협정상 보호범위와 일치하므로 옳다.

**오답 포인트**

이 문제를 틀렸다면 지리적표시권이나 디자인권을 부수적 제도로 오해했을 가능성이 높다. TRIPS는 저작권만 다루는 협정이 아니라 상표, 지리적표시, 산업디자인, 특허 등 여러 지식재산권을 포괄적으로 규율한다는 점이 함정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국제지식재산 협정의 보호대상을 묻는 문제는 개별 권리를 따로 떼어 외우기보다 TRIPS Part II의 열거 항목인지부터 확인한다. 보기의 각 권리가 독립된 보호유형으로 규정되어 있으면 일부만 고른 조합은 버리고 전체 포함 여부를 먼저 본다.

**암기 포인트**

TRIPS 보호대상은 상표, 지리적표시, 디자인, 특허를 모두 포함하는 포괄 목록이다.

NoteBase

**문 7. 신제품 도입 초기에 높은 가격을 책정함으로써 초기에 이윤을 극대화하고, 시간이 지나면서 시장경쟁상황에 따라 점차적으로 가격을 인하해 나감으로써 시장점유율을 유지시켜 나가는 국제가격전략은?**

① Penetration Pricing Strategy
② Skimming Pricing Strategy
③ Reference Pricing Strategy
④ Odd Pricing Strategy

**정답 2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신제품 도입 초기에 고가로 출발한 뒤 시간이 지나며 가격을 점차 인하하는 스키밍 가격전략과 다른 가격전략의 차이를 묻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스키밍 가격전략은 신제품 도입 초기에 높은 가격을 책정해 초기 수요층에서 이윤을 먼저 회수한 뒤 경쟁과 시장확대에 맞춰 가격을 점차 인하하는 전략이다.
침투 가격전략은 시장점유율 확대를 위해 처음부터 낮은 가격으로 시장에 빠르게 들어가는 전략이다.
준거가격전략은 소비자가 머릿속에 가진 기준가격과 실제 제시가격의 비교를 활용하는 전략이고,
단수가격전략은 가격 끝자리를 9나 99로 맞춰 심리적 저가 인식을 유도하는 전략이다.

**선지별 해설**

① X: 틀린 부분은 발문의 '초기에 높은 가격'과 '점차적 가격 인하'를 침투 가격전략으로 본 점이다. Penetration Pricing Strategy는 처음부터 낮은 가격으로 시장침투와 점유율 확대를 노리는 전략이므로, 올바르게는 '초기 저가격으로 시장에 빠르게 침투하는 전략'이다.
② O: Skimming Pricing Strategy는 신제품 도입 초기에 고가를 책정해 초기 이윤을 극대화하고, 이후 경쟁상황에 맞추어 가격을 단계적으로 인하하는 전략이므로 발문과 정확히 일치한다.
③ X: 틀린 부분은 Reference Pricing Strategy를 도입기 고가 후 점진적 인하 전략으로 본 점이다. Reference Pricing Strategy는 소비자가 기대하는 기준가격과 실제 가격의 비교를 이용하는 전략이므로, 올바르게는 '기준가격 인식을 활용하는 가격전략'이다.
④ X: 틀린 부분은 Odd Pricing Strategy를 신제품 도입 초기의 고가전략으로 본 점이다. Odd Pricing Strategy는 9,900원처럼 가격 끝자리를 조정해 심리적으로 더 싸게 느끼게 하는 전략이므로, 올바르게는 '가격 끝자리를 활용하는 심리가격전략'이다.

NoteBase

**오답 포인트**

스키밍과 침투는 둘 다 신제품 도입기에 쓰이는 전략이라 혼동하기 쉽다. 이 문항은 '초기에 높은 가격'이라는 표현이 핵심인데, 이를 놓치면 시장점유율이라는 단어만 보고 ①로 오인하기 쉽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도입기 가격전략 문제는 먼저 출발가격이 높은지 낮은지를 본다. 초기 고가로 이윤회수이면 스키밍이고, 초기 저가로 점유율 확대이면 침투로 판단할 수 있다.

**암기 포인트**

스키밍은 고가 출발 후 인하, 침투는 저가 출발 후 점유율 확대이다.

NoteBase

**문 8. 발라사(Balassa)가 분류한 경제통합의 유형을 발전단계에 따라 낮은 단계부터 순서대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① 자유무역지역 - 공동시장 - 관세동맹 - 경제동맹 - 완전경제통합
② 자유무역지역 - 공동시장 - 경제동맹 - 관세동맹 - 완전경제통합
③ 자유무역지역 - 관세동맹 - 공동시장 - 경제동맹 - 완전경제통합
④ 자유무역지역 - 관세동맹 - 경제동맹 - 공동시장 - 완전경제통합

**정답 3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발라사가 제시한 경제통합의 발전단계를 낮은 단계부터 높은 단계까지 올바르게 배열할 수 있는지를 묻는 문제이다.

**올바른 순서**

1. 자유무역지역 - 회원국 사이의 관세와 수량제한을 없애지만 대외공통관세는 두지 않는 단계이다.
2. 관세동맹 - 역내 자유무역에 더해 비회원국에 대한 공통관세를 채택하는 단계이다.
3. 공동시장 - 관세동맹에 더해 노동과 자본 같은 생산요소의 이동까지 자유화하는 단계이다.
4. 경제동맹 - 공동시장에 더해 재정, 금융, 통화 등 경제정책의 조정을 강화하는 단계이다.
5. 완전경제통합 - 초국가적 기구 아래에서 경제정책이 사실상 통합되는 최고 단계이다.

왜 이 순서: 공동시장은 관세동맹처럼 대외공통관세가 먼저 갖추어져야 그 위에 생산요소 이동의 자유가 추가될 수 있고, 경제동맹은 공동시장 위에 정책조정이 더해지는 단계이기 때문이다.

**선지별 해설**

① X: 틀린 부분은 "자유무역지역 - 공동시장 - 관세동맹"의 배열이다. 공동시장은 관세동맹보다 높은 단계이므로 대외공통관세를 먼저 갖춘 뒤 생산요소 이동 자유가 추가된다. 올바르게는 "자유무역지역 - 관세동맹 - 공동시장 - 경제동맹 - 완전경제통합"이다.
② X: 틀린 부분은 "자유무역지역 - 공동시장 - 경제동맹 - 관세동맹"의 배열이다. 관세동맹이 공동시장보다 먼저이고, 경제동맹은 공동시장 다음 단계이므로 중간 단계들이 모두 뒤섞여 있다. 올바르게는 "자유무역지역 - 관세동맹 - 공동시장 - 경제동맹 - 완전경제통합"이다.
③ O: 자유무역지역 다음에 관세동맹, 그다음 공동시장, 경제동맹, 완전경제통합으로 배열하여 발라사의 경제통합 발전단계를 정확히 제시하였다.
④ X: 틀린 부분은 "관세동맹 - 경제동맹 - 공동시장"의 배열이다. 경제동맹은 공동시장에 경제정책 조정이 추가된 단계이므로 공동시장보다 앞설 수 없다. 올바르게는 "자유무역지역 - 관세동맹 - 공동시장 - 경제동맹 - 완전경제통합"이다.

NoteBase

### 오답 포인트

함정은 관세동맹과 공동시장, 공동시장과 경제동맹의 경계를 흐리게 만드는 데 있다. 대외공통관세의 채택은 관세동맹의 표지이고, 생산요소 이동 자유는 공동시장의 표지이며, 경제정책 조정은 경제동맹의 표지라는 점을 구분하지 못하면 ①, ②, ④에 쉽게 끌린다.

###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경제통합 순서 문제는 "역내 상품자유화 -> 대외공통관세 -> 생산요소 이동 자유 -> 경제정책 조정 -> 초국가적 완전통합"의 누적 구조로 판단하면 된다. 뒤 단계는 반드시 앞 단계의 기능을 포함한 상태에서 하나의 통합요소가 더 추가된다고 보면 된다.

### 암기 포인트

자관공경완: 자유무역지역 -> 관세동맹 -> 공동시장 -> 경제동맹 -> 완전경제통합이다.

NoteBase

**문 9. 해외시장 진입 방법의 일반적 유형으로 옳은 것은?**

① 라이센싱은 특정 기업이 자신의 특허, 노하우, 기술 등과 같은 무형재산을 일정기간 동안 다른 기업에게 사용하도록 허용하고, 그 대가로 로열티나 다른 형태의 보상을 받도록 체결하는 계약형태이다.

② 계약생산방식은 현지국 기업의 경영업무를 대신 맡아 관리할 권한을 부여받고, 이에 대해 일정한 대가를 수취하는 계약형태이다.

③ 턴키계약은 국제기업이 진출대상국에 있는 기존의 제조업체로 하여금 일정한 계약조건하에서 제품을 생산하도록 하고, 이를 현지국이나 제3국에 판매하는 계약형태이다.

④ 합작투자방식은 기획, 조사, 설계, 조달, 시공 등 프로젝트 전체를 포괄하는 일괄수주 계약형태이다.

**정답 1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라이센싱, 계약생산, 턴키계약, 합작투자의 정의를 구별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핵심 개념**

라이센싱은 특허·상표·노하우 같은 무형재산의 사용권을 일정 기간 허락하고 로열티를 받는 방식이다.
계약생산은 현지 제조업체에 제품 생산을 위탁하는 방식이다.
턴키계약은 설비나 공장을 기획·설계·시공해 완성된 상태로 인도하는 일괄수주 방식이다.
합작투자는 현지 파트너와 공동출자해 소유와 위험, 이익을 함께 부담하는 방식이다.

**선지별 해설**

1번: O. 라이센싱은 기업이 보유한 특허, 노하우, 기술 등 무형재산의 사용을 다른 기업에 허락하고 그 대가로 로열티나 보상을 받는 계약이므로 설명이 맞다.
2번: X. 틀린 부분은 "현지국 기업의 경영업무를 대신 맡아 관리할 권한"이다. 이는 관리계약의 설명이다. 계약생산은 현지 제조업체에 생산만 위탁하는 방식으로 고쳐야 한다.
3번: X. 틀린 부분은 "진출대상국에 있는 기존의 제조업체로 하여금 일정한 계약조건하에서 제품을 생산"하게 한다는 점이다. 이는 계약생산에 가깝다. 턴키계약은 프로젝트 전체를 완성해 즉시 가동 가능한 상태로 넘겨주는 방식으로 고쳐야 한다.
4번: X. 틀린 부분은 "기획, 조사, 설계, 조달, 시공 등 프로젝트 전체를 포괄하는 일괄수주 계약형태"이다. 이는 턴키계약의 설명이다. 합작투자는 둘 이상의 기업이 공동출자해 현지에 새 회사를 세우거나 기존 회사를 공동소유하는 방식으로 고쳐야 한다.

**오답 포인트**

해외시장 진입 방식은 이름보다 거래의 대상이 무엇인지로 구별해야 한다. 무형재산을 빌려주면 라이센싱, 생산을 맡기면 계약생산, 완성된 설비를 넘기면 턴키, 지분을 함께 가지면 합작투자이다.

NoteBase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선지를 보면 먼저 무엇을 이전하거나 공동으로 하는지 확인한다. 기술·상표 사용권이면 라이센싱, 생산기능 위탁이면 계약생산, 프로젝트 완성 인도면 턴키, 공동출자와 공동소유가 나오면 합작투자로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라이센싱은 무형재산 사용허락, 계약생산은 현지업체 생산위탁, 턴키는 완성설비 인도, 합작투자는 공동출자이다.

NoteBase

**문 10. 신라운드(New Round) 중 국제기준보다 낮은 노동기준하에서 생산된 제품의 수출국에 대해 무역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노동이나 근로조건을 국제무역과 연계시키는 것을 논의한 라운드는?**

① Green Round
② Blue Round
③ Competition Round
④ Technology Round

**정답 2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신라운드의 주요 의제 중 노동기준과 무역의 연계를 묻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Blue Round는 국제노동기준이나 근로조건을 무역규범과 연계하여 논의하는 의제이다. Green Round는 환경보호와 무역의 연계를 다루는 의제이다. Competition Round는 경쟁정책과 독과점 규범의 국제적 조화를 다루는 의제이다. Technology Round는 기술이전이나 기술 관련 통상이슈를 다루는 의제이다.

**선지별 해설**

① X
Green Round는 환경기준과 무역의 연계를 다루는 의제이므로 노동기준과 연결되지 않는다. 틀린 부분은 "Green"이다. 올바르게는 환경문제는 Green Round, 노동문제는 Blue Round이다.

② O
Blue Round는 국제기준보다 낮은 노동기준이나 열악한 근로조건을 무역문제와 연결하여 논의하는 의제이므로 옳다.

③ X
Competition Round는 국제무역에서의 경쟁정책, 독과점 규제, 공정경쟁 질서를 다루는 의제이다. 틀린 부분은 "Competition"이다. 올바르게는 노동기준 연계는 Blue Round이다.

④ X
Technology Round는 기술이전이나 기술 관련 통상문제를 다루는 의제이다. 틀린 부분은 "Technology"이다. 올바르게는 노동이나 근로조건의 무역 연계는 Blue Round이다.

NoteBase

**오답 포인트**

신라운드 명칭을 색깔이나 일반 영어단어로만 외우면 Green과 Blue를 서로 바꾸기 쉽다. 이 문항은 "노동기준"이라는 핵심어를 보고 환경이 아니라 노동의제인 Blue Round로 바로 연결하는지가 함정 포인트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신라운드 문제는 발문 속 핵심어를 의제별로 대응시키면 된다. 환경이면 Green, 노동기준이나 근로조건이면 Blue, 경쟁정책이면 Competition, 기술이전이나 기술통상이면 Technology로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Green은 환경, Blue는 노동, Competition은 경쟁, Technology는 기술로 묶어 기억한다.

NoteBase

**문 11.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UN협약(CISG)상 매수인의 계약위반에 대해 매도인이 행사할 수 있는 구제권은?**

① 대체물품인도청구권

② 하자보완청구권

③ 대금감액청구권

④ 물품명세확정권

**정답 4번**

### 쟁점

이 문제는 CISG상 매수인의 계약위반에 대하여 매도인이 행사할 수 있는 구제수단을 구별하는 문제이다. 핵심은 매도인의 구제권과 매수인의 구제권을 정확히 나누는 것이다.

### 용어 풀이

물품명세확정권은 계약상 물품의 형상, 치수, 기타 특성을 매수인이 지정하여야 하는데 이를 하지 않으면 매도인이 그 명세를 스스로 확정할 수 있는 권리이다.

### 핵심 구분

CISG는 매도인의 계약위반에 대한 매수인의 구제와, 매수인의 계약위반에 대한 매도인의 구제를 구분한다. 대체물품 인도청구권, 하자보완청구권, 대금감액청구권은 모두 매도인의 불이행이나 하자 있는 이행에 대한 매수인의 권리이다. 반면 물품명세확정권은 매수인이 물품의 형상·치수·기타 특성을 제때 지정하지 않을 때 매도인이 행사하는 권리이다.

NoteBase

### 선지별 해설

① X
- 대체물품 인도청구권은 하자 있는 물품에 대하여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대체물품의 인도를 요구하는 권리이다. 매수인의 계약위반에 대한 매도인의 구제권이 아니다.
- 틀린 표현: 매도인이 행사할 수 있는 구제권
- 올바른 표현: 대체물품 인도청구권은 매도인의 계약위반에 대하여 매수인이 행사할 수 있는 구제권이다.

② X
- 하자보완청구권은 계약에 맞지 않는 물품이 인도된 경우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수리나 보완을 요구하는 권리이다. 따라서 매도인의 권리가 아니라 매수인의 권리이다.
- 틀린 표현: 매도인이 행사할 수 있는 구제권
- 올바른 표현: 하자보완청구권은 매도인의 계약위반에 대하여 매수인이 행사할 수 있는 구제권이다.

③ X
- 대금감액청구권은 물품이 계약에 적합하지 않을 때 매수인이 그 하자 정도에 따라 대금을 감액하는 권리이다. 이것도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행사하는 권리가 아니다.
- 틀린 표현: 매도인이 행사할 수 있는 구제권
- 올바른 표현: 대금감액청구권은 하자 있는 물품이 인도된 경우 매수인이 행사할 수 있는 구제권이다.

④ O
- 물품명세확정권은 계약상 매수인이 물품의 형상, 치수 또는 기타 특성을 정해야 하는데 이를 하지 않으면 매도인이 스스로 명세를 확정할 수 있는 권리이다. 이는 매수인의 계약위반에 대응하는 매도인의 구제권에 해당한다.

### 오답 포인트

이 문제를 틀렸다면 CISG의 구제수단을 주체별로 나누지 못한 것이다. ①~③은 모두 비슷하게 그럴듯한 구제수단 이름이지만 공통적으로 매수인의 권리라는 점을 놓치기 쉽다.

###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CISG 구제수단 문제는 먼저 누가 계약을 위반했는지와 지금 권리를 행사하는 주체가 누구인지부터 본다. 하자 있는 물품에 대한 대체물품 인도, 보완, 대금감액은 매수인 쪽이고, 매수인이 명세를 정하지 않는 불이행에는 매도인의 물품명세확정권이 대응한다.

### 암기 포인트

대체·보완·감액은 매수인, 명세확정은 매도인이다.

NoteBase

**문 12. 근대무역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국가 간에 교환되는 재화의 가치는 노동생산성이 같을 때 그 재화의 생산에 투입된 노동의 양에 의해 결정된다는 이론이다.

② 레온티에프(Leontief)는 헥셔-오린(Heckscher-Ohlin)정리의 제1명제인 요소부존이론을 검증하였다.

③ 하벌러(Haberler)는 노동가치설 대신 기회비용의 개념을 도입하여 무역의 발생 원인을 설명하였다.

④ 스톨퍼-사뮤엘슨(Stolper-Samuelson)은 헥셔-오린정리의 제2명제인 요소가격균등화이론에 입각하여 고임금국가와 저임금국가가 자유무역을 할 경우 두 국가의 임금수준이 균등화된다고 하였다.

**정답 1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고전·근대 무역이론의 핵심 학자와 대표 명제를 정확히 연결할 수 있는지, 특히 노동가치설이 국내 가치론인지 국제 교환가치론인지를 구분할 수 있는지를 묻는 문제이다.

**핵심 정리**

고전학파의 노동가치설(리카도)은 한 나라 안에서 노동이 동질적이라는 가정 아래 재화의 국내 상대가격이 투하노동량에 의해 결정된다고 보고, 이를 통해 어느 재화에 비교우위가 있는지를 판정하는 이론이다. 반면 두 나라 사이의 실제 교환비율(교역조건)은 노동투입량이 아니라 상호수요(J.S. 밀)로 설명하는 별개의 문제이다.
레온티에프는 미국 자료로 헥셔-오린의 요소부존 명제를 실증적으로 시험하였고, 그 결과가 이른바 레온티에프 역설이다.
하벌러는 노동가치설 대신 기회비용설로 비교우위와 무역발생 원인을 설명하였다.
헥셔-오린 계열의 요소가격균등화 명제는 자유무역이 재화가격을 통해 요소가격 격차를 줄여 간다고 본다.

NoteBase

### 선지별 해설

① X
이 선지가 틀린 핵심은 노동가치설을 '국가 간에 교환되는 재화의 가치'에까지 그대로 적용한 점이다.
리카도의 노동가치설은 한 나라 안에서 노동이 동질적이라는 전제 아래 재화의 국내 상대가격이 투하노동량에 의해 결정된다고 보며, 이를 통해 각국이 어느 재화에 비교우위를 갖는지를 판정하는 데 쓰인다.
그러나 두 나라 사이의 실제 교환비율, 즉 교역조건은 각국의 국내 노동비용 비율 사이에서 상호수요(J.S. 밀)에 의해 결정되며 투입 노동량만으로 정해지지 않는다.
따라서 국제 간 교환가치가 노동투입량에 의해 결정된다고 서술한 이 선지는 옳지 않다.
덧붙여 리카도 모형은 나라마다 노동생산성(단위노동투입계수)이 다르다는 전제에서 비교우위와 무역이 발생한다고 보므로, '노동생산성이 같을 때'라는 조건 역시 이론의 원래 전제와 어긋난다.

② O
레온티에프는 헥셔-오린의 요소부존이론을 미국 산업연관 자료로 실증적으로 검토하였다.
여기서 '검증'은 이론을 지지했다는 뜻이 아니라 실증적으로 시험했다는 의미이며, 검토 결과 미국이 자본풍부국인데도 노동집약재를 더 많이 수출하는 것으로 나타나 레온티에프 역설이 제기되었다.

③ O
하벌러는 노동가치설의 한계를 보완하고자 기회비용 개념을 도입하였다.
비교우위는 절대 노동량이 아니라 한 재화를 선택할 때 포기하는 다른 재화의 비용 차이로 설명된다는 점이 핵심이다.

④ O
엄밀히 보면 요소가격이 국가 간에 같아진다는 요소가격균등화 명제는 헥셔-오린-사무엘슨(사무엘슨) 정리이고, 스톨퍼-사무엘슨 정리는 재화의 상대가격 변화가 요소의 실질보수에 미치는 영향을 다루는 별개의 명제이다.
다만 이 선지는 자유무역이 재화가격의 수렴을 통해 요소가격 격차를 줄인다는 헥셔-오린 계열 요소가격균등화의 내용을 묻는 것으로, 고임금국가와 저임금국가가 자유무역을 하면 임금수준이 균등화 방향으로 움직인다는 서술 자체는 요소가격균등화 명제의 취지에 부합하므로 옳은 것으로 본다.

### 오답 포인트

①은 '노동량으로 가치가 결정된다'는 익숙한 표현 때문에 맞는 말처럼 보이지만, 국내 가치론을 곧바로 국가 간 교환가치(교역조건) 설명으로 확장한 점이 함정이다. 교역조건을 정하는 것은 노동투입량이 아니라 상호수요(밀)이다. ②도 '검증'이라는 말을 '입증'으로만 읽으면 틀려 보이지만, 이 문맥에서는 실증적으로 시험했다는 뜻으로 이해하는 것이 맞다.

NoteBase

###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무역이론 문제는 학자명과 대표 연결어를 먼저 잡으면 빠르다. 레온티에프는 실증검정과 역설, 하벌러는 기회비용, 헥셔-오린 계열은 요소부존과 요소가격균등화로 연결해 판단하면 된다. 노동가치설이 나오면 국내 가치론(상대가격·비교우위 판정)인지 국제교환가치론(교역조건·상호수요)인지부터 구분한다.

### 암기 포인트

레온티에프=H-O 실증검정과 역설, 하벌러=기회비용, 노동가치설=국내 상대가격 결정(교역조건은 상호수요=밀)이다.

NoteBase

**문 13. 해상운송계약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용선운송계약은 선박회사가 다수의 화주로부터 개개의 물품을 대상으로 개별적으로 운송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말한다.

② 개품운송계약은 화주가 선박회사로부터 선복(ship's space)의 전부 또는 일부를 빌려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말한다.

③ 항해용선계약은 화주가 선주로부터 일정기간 선박을 빌리는 것으로 용선기간에 따라 용선료를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④ 나용선계약은 용선자가 선주로부터 아무런 장비를 갖추지 않은 선체(bareboat)만 빌리고 선박의 운항에 필요한 선원, 장비, 소모품 등은 용선자가 책임을 지는 것을 말한다.

**정답 4번**

**출제 포인트**

해상운송계약의 기본 유형인 개품운송계약, 용선운송계약, 항해용선계약, 정기용선계약, 나용선계약의 정의와 구별 기준을 묻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개품운송계약은 선박회사가 다수의 화주와 개별 화물 단위로 체결하는 운송계약이다.
용선운송계약은 화주가 선박이나 선복의 전부 또는 일부를 빌려 운송을 의뢰하는 계약이다.
항해용선계약은 특정 1항해 또는 일정 항로 수행을 기준으로 선박을 이용하는 계약이다.
정기용선계약은 일정 기간 선박을 빌리고 기간에 따라 용선료를 지급하는 계약이다.
나용선계약은 선체만 빌리고 선원, 장비, 소모품, 운항 책임을 용선자가 부담하는 계약이다.

**선지별 해설**

① X: 다수의 화주로부터 개개의 물품을 대상으로 개별적으로 운송계약을 체결하는 형태는 용선운송계약이 아니라 개품운송계약이다. 틀린 표현은 '용선운송계약'이며, 올바르게는 '개품운송계약'이다.
② X: 화주가 선박회사로부터 선복의 전부 또는 일부를 빌려 계약을 체결하는 형태는 개품운송계약이 아니라 용선운송계약이다. 틀린 표현은 '개품운송계약'이며, 올바르게는 '용선운송계약'이다.
③ X: 일정기간 선박을 빌리고 용선기간에 따라 용선료를 지급하는 것은 항해용선계약이 아니라 정기용선계약이다. 항해용선계약은 기간 기준이 아니라 특정 항해 수행이 기준이다. 틀린 표현은 '항해용선계약'이며, 올바르게는 '정기용선계약'이다.
④ O: 나용선계약은 bareboat charter로서 선체만 빌리고 운항에 필요한 선원, 장비, 소모품 등의 부담과 관리 책임을 용선자가 지는 계약이므로 옳다.

NoteBase

**오답 포인트**

①과 ②는 개품운송계약과 용선운송계약의 정의를 서로 바꾸어 놓은 것이 함정이다. ③은 '일정기간', '용선기간에 따라 용선료 지급'이라는 표현이 정기용선계약의 핵심인데 이를 항해용선계약으로 바꾸어 놓아 혼동을 유도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먼저 계약 기준이 개별 화물인지, 선복 전체 또는 일부인지 구분하면 개품운송계약과 용선운송계약이 갈린다. 그다음 용선계약이 항해 단위인지 기간 단위인지 보면 항해용선계약과 정기용선계약이 갈리고, 선체만 빌려 운항 책임까지 용선자가 지면 나용선계약이다.

**암기 포인트**

개품은 화물 단위, 항해용선은 항해 단위, 정기용선은 기간 단위, 나용선은 선체만 빌리는 계약이다.

NoteBase

**문 14. 분쟁해결조건(terms of dispute settlement)에 대한 설명이다. ㉠, ㉡에 들어갈 용어를 순서대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는 소송을 제기할 관할법원에 대한 당사자 간의 합의를 기재한 조항이며, (㉡)는 무역계약의 성립, 이행 및 해석이 어느 국가의 법률에 따라 행하여지는지에 대하여 당사자 간에 합의한 조항을 말한다.

① ㉠: Governing Law Clause, ㉡: Jurisdiction Clause

② ㉠: Jurisdiction Clause, ㉡: Governing Law Clause

③ ㉠: Governing Law Clause, ㉡: Infringement Clause

④ ㉠: Entire Agreement Clause, ㉡: Governing Law Clause

**정답 2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분쟁해결조항 가운데 관할합의조항과 준거법조항의 기능 차이를 묻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Jurisdiction Clause: 분쟁이 생겼을 때 어느 법원에 소를 제기할지를 당사자가 미리 정하는 조항이다. 키워드는 관할법원이다.
Governing Law Clause: 계약의 성립, 이행, 해석에 어떤 국가의 법을 적용할지를 정하는 조항이다. 키워드는 적용법, 준거법이다.
Entire Agreement Clause: 계약서가 당사자 간 전체 합의를 이룬다는 점을 확인하는 조항이다.
Infringement Clause: 침해나 위반과 관련한 책임 문제를 다루는 조항이지, 적용법을 정하는 조항은 아니다.

NoteBase

### 선지별 해설

① X
ㄱ을 Governing Law Clause로, ㄴ을 Jurisdiction Clause로 놓은 대응이 뒤바뀌었다. ㄱ은 소송을 제기할 관할법원에 관한 합의이므로 Jurisdiction Clause이고, ㄴ은 계약의 성립·이행·해석에 적용될 법을 정하므로 Governing Law Clause이다.

② O
ㄱ은 Jurisdiction Clause이고 ㄴ은 Governing Law Clause이므로 지문 설명과 정확히 일치한다. 관할법원과 준거법을 각각 구분한 정답 조합이다.

③ X
틀린 부분은 ㄴ을 Infringement Clause로 본 점이다. ㄴ은 침해 여부가 아니라 계약 전반에 어떤 국가의 법을 적용할지를 정하는 내용이므로 Governing Law Clause가 맞다. 또한 ㄱ도 Governing Law Clause가 아니라 Jurisdiction Clause이다.

④ X
틀린 부분은 ㄱ을 Entire Agreement Clause로 본 점이다. Entire Agreement Clause는 계약서가 최종적이고 완전한 합의라는 점을 선언하는 조항일 뿐 관할법원을 정하지 않는다. ㄱ은 Jurisdiction Clause이고, ㄴ은 Governing Law Clause이다.

### 오답 포인트

관할법원과 준거법은 모두 분쟁해결 파트에 들어가므로 쉽게 섞인다. 이 문제는 "어느 법원"이면 Jurisdiction, "어느 나라 법"이면 Governing Law라는 축을 분리했는지를 묻는다.

###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선지에 법원 선택이 나오면 관할합의조항부터 떠올리고, 적용할 국가의 법이 나오면 준거법조항으로 판단하면 된다. 분쟁해결조항은 재판 장소와 적용 법규를 나누어 읽으면 정리가 된다.

### 암기 포인트

법원은 Jurisdiction, 법은 Governing Law이다.

NoteBase

**문 15. 추심에 관한 통일규칙(URC 522)에 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① 상업서류(commercial documents)란 환어음, 약속어음, 수표 또는 기타 금전의 지급을 받기 위하여 사용되는 증서를 의미한다.

② 추심지시서는 추심의뢰은행(remitting bank)이 추심은행(collecting bank)으로 직접 송부하여야 하며, 다른 중개은행을 통하여 송부될 수 없다.

③ 서류가 일람출급인 경우 제시은행(presenting bank)은 지체없이 지급을 위한 제시를 하여야 한다.

④ 추심의뢰인(principal)은 추심지시서에 따라 제시를 받아야 할 자를 말한다.

**정답 3번**

**쟁점**

이 문제는 URC 522상 상업서류와 금융서류의 구분, 추심 당사자의 정의, 추심지시서 송부 방식, 일람출급 서류의 제시 의무를 정확히 구별하는 문제이다.

**용어 풀이**

상업서류는 송장, 운송서류, 권리증권 등 금융서류가 아닌 거래서류이다.
추심의뢰인은 추심 취급을 은행에 맡기는 자이고, 지급인은 추심지시서에 따라 제시를 받는 자이다.

**핵심 구분**

URC 522는 금융서류와 상업서류를 구분하고, 추심의뢰인과 지급인도 별개의 당사자로 본다.
또한 추심지시서는 추심의뢰은행이 추심은행에 직접 보낼 수도 있고 다른 은행을 중개로 보낼 수도 있으며, 일람출급 서류는 제시은행이 지체 없이 지급을 위한 제시를 하여야 한다.

NoteBase

### 선지별 해설

1번: X. 환어음, 약속어음, 수표는 상업서류가 아니라 금융서류이다. URC 522는 이를 금전 지급을 받기 위한 금융서류로 본다.
틀린 표현: "상업서류란 환어음, 약속어음, 수표 또는 기타 금전의 지급을 받기 위하여 사용되는 증서"
올바른 표현: "그 내용은 금융서류의 정의이고, 상업서류는 송장, 운송서류, 권리증권 등 금융서류가 아닌 서류이다."
2번: X. 추심지시서는 추심의뢰은행이 추심은행으로 직접 송부할 수도 있고 다른 은행을 중개은행으로 하여 송부할 수도 있다.
틀린 표현: "추심의뢰은행이 추심은행으로 직접 송부하여야 하며, 다른 중개은행을 통하여 송부될 수 없다"
올바른 표현: "직접 송부도 가능하고 다른 은행을 중개로 송부하는 것도 가능하다."
3번: O. URC 522는 서류가 일람출급인 경우 제시은행이 지체 없이 지급을 위한 제시를 하도록 규정한다. 일람출급은 제시 즉시 지급을 전제로 하므로 신속한 제시가 원칙이다.
4번: X. 추심의뢰인은 추심 취급을 은행에 맡기는 자이고, 추심지시서에 따라 제시를 받아야 할 자는 지급인이다.
틀린 표현: "추심의뢰인은 추심지시서에 따라 제시를 받아야 할 자"
올바른 표현: "추심의뢰인은 추심 취급을 은행에 위탁한 자이고, 제시를 받는 자는 지급인이다."

### 오답 포인트

1번은 상업서류와 금융서류의 정의를 뒤바꾼 함정이고, 4번은 추심의뢰인과 지급인의 지위를 바꿔 놓은 함정이다. 2번은 실무상 송부 경로를 지나치게 제한하는 표현인 "직접 송부하여야 한다"를 넣어 틀리게 만든 선지이다.

###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URC 522 문항은 먼저 당사자 정의를 구분하고, 다음으로 서류 종류와 송부 방식, 마지막으로 지급·인수 제시 시점을 확인하면 된다. 특히 "반드시", "할 수 없다"처럼 예외를 막는 단정 표현이 나오면 원문 규칙과 대조해 판단한다.

### 암기 포인트

환어음·약속어음·수표는 금융서류, 송장·운송서류는 상업서류, principal은 위탁자, drawee는 제시를 받는 자이다.

NoteBase

**문 16. 글로벌경영환경에서 비교문화적 분석방법을 통해 문화적 차이를 이해하는데 유용한 모형으로 평가되고 있는 홀(Hall) 모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직원을 채용할 때 저배경 문화와 고배경 문화 모두 인맥보다 회사에 대한 기여도를 중시하는 점에서는 차이가 없다.
ㄴ. 저배경 문화에서는 상황보다 명시적으로 작성된 문서나 기록이 더 중요한 역할을 한다.
ㄷ. 고배경 문화는 협상 시 시간이 걸리며 협상과정을 통해 서로를 이해하는 반면, 저배경 문화는 협상이 신속하게 진행된다.
ㄹ. 조직의 실패에 대한 책임소재는 저배경 문화에서는 최고위층에 두는 반면, 고배경 문화에서는 최하위층의 실무자에게 둔다.

① ㄱ, ㄷ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ㄴ, ㄹ

**정답 3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홀(Hall)의 저배경 문화와 고배경 문화의 차이를 의사소통 방식, 관계 중시 정도, 협상 진행 방식으로 구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저배경 문화는 의미를 말과 문서에 직접 담아 전달하는 문화이다. 결정 차이축은 상황 맥락보다 명시적 표현을 중시하는가에 있다. 키워드는 문서, 직접성, 계약이다.
고배경 문화는 의미를 관계와 상황 맥락 속에 많이 담아 전달하는 문화이다. 결정 차이축은 명시적 표현보다 암묵적 이해와 인간관계를 중시하는가에 있다. 키워드는 관계, 암묵성, 신뢰이다.

NoteBase

### 선지별 해설

① X
ㄱ은 틀리다. 틀린 표현은 '저배경 문화와 고배경 문화 모두'와 '차이가 없다'이다. 고배경 문화는 채용과 거래에서 인맥, 관계, 신뢰를 더 중시하는 경향이 있어 저배경 문화와 동일하게 회사 기여도만 중시한다고 볼 수 없다.
ㄷ은 맞다. 고배경 문화는 협상 과정에서 관계 형성과 상호 이해에 시간이 걸리고, 저배경 문화는 조건을 명시적으로 제시하므로 협상이 비교적 빠르다.
따라서 ①의 조합은 틀리며, 올바르게는 'ㄴ, ㄷ'이다.

② X
ㄱ과 ㄹ이 포함되어 있어 틀리다. ㄱ은 고배경 문화의 관계 중시 성향을 무시한 진술이다.
ㄹ도 틀리다. 틀린 표현은 '저배경 문화에서는 최고위층에 두는 반면, 고배경 문화에서는 최하위층의 실무자에게 둔다'이다. 올바르게는 홀 모형의 핵심 구분은 책임소재를 위아래 어디에 두는가가 아니라, 의사소통이 명시적 문서 중심인가 맥락 중심인가에 있다.
따라서 ②의 조합은 틀리며, 올바르게는 'ㄴ, ㄷ'이다.

③ O
ㄴ은 맞다. 저배경 문화에서는 상황의 암묵적 해석보다 명시적으로 작성된 문서, 계약, 기록이 더 중요한 역할을 한다.
ㄷ도 맞다. 고배경 문화는 관계 형성과 신뢰 축적이 중요하여 협상에 시간이 더 걸리는 편이고, 저배경 문화는 거래 조건을 분명히 해 협상이 상대적으로 신속하다.
따라서 ③의 'ㄴ, ㄷ' 조합이 옳다.

④ X
ㄴ은 맞지만 ㄹ이 틀리므로 조합 전체는 틀리다.
ㄹ의 틀린 표현은 책임소재를 저배경 문화는 최고위층, 고배경 문화는 최하위 실무자에게 둔다고 단정한 부분이다. 올바르게는 홀 모형은 책임 귀속의 상하보다 메시지 전달 방식과 맥락 의존성의 차이를 설명하는 모형이다.
따라서 ④의 조합은 틀리며, 올바르게는 'ㄴ, ㄷ'이다.

### 오답 포인트

저배경 문화는 문서와 명시성, 고배경 문화는 관계와 맥락이라는 기본 축을 놓치면 ㄱ처럼 두 문화를 같게 보거나 ㄹ처럼 책임소재 문제로 비틀어 놓은 선지에 끌리기 쉽다. 특히 '책임을 누구에게 두는가'는 홀 모형의 대표 구분축이 아니다.

NoteBase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홀 모형 문제는 먼저 의미가 말과 문서에 직접 실리는지, 아니면 관계와 상황 맥락에 실리는지를 본다. 문서, 계약, 직접성, 빠른 거래는 저배경 문화로, 관계, 암묵성, 신뢰 형성, 긴 협상 과정은 고배경 문화로 연결하면 판단이 정리된다.

**암기 포인트**

저배경은 문서와 직접성, 고배경은 관계와 맥락이다.

NoteBase

**문 17. 균형성과표(BSC)의 4가지 관점 중 가장 미래지향적인 관점이자 다른 3가지 관점의 성과를 이끌어내는 원동력인 관점은?**

① 재무적 관점

② 고객 관점

③ 내부 프로세스 관점

④ 학습과 성장 관점

**정답 4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균형성과표(BSC)의 4가지 관점 중에서 가장 미래지향적이며 다른 관점의 성과를 가능하게 하는 선행동인 관점을 구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재무적 관점: 수익성, 성장성, 비용절감처럼 최종 재무성과를 확인하는 관점이다. / 결정 차이축: 결과지표 중심 / 키워드: 후행성과
고객 관점: 고객만족, 고객유지, 시장점유율처럼 시장에서 드러나는 고객성과를 보는 관점이다. / 결정 차이축: 고객가치 실현 / 키워드: 시장성과
내부 프로세스 관점: 품질, 생산성, 혁신, 서비스 과정처럼 내부 업무수행의 효율성과 개선을 보는 관점이다. / 결정 차이축: 업무과정 개선 / 키워드: 프로세스
학습과 성장 관점: 인적자원, 정보시스템, 조직문화처럼 장기 역량을 축적하여 내부 프로세스, 고객, 재무 성과를 떠받치는 기반을 보는 관점이다. / 결정 차이축: 미래 역량의 원천 / 키워드: 선행동인

**선지 ①**

X. 재무적 관점은 매출, 이익, 투자수익률처럼 최종적으로 나타나는 성과를 확인하는 관점이다. 틀린 표현은 재무적 관점을 '가장 미래지향적이며 다른 3가지 관점의 성과를 이끌어내는 원동력'으로 보는 점이다.
올바르게는 재무적 관점은 다른 관점의 성과가 축적된 뒤 나타나는 후행적 결과관점이다.

**선지 ②**

X. 고객 관점은 고객만족도, 충성도, 시장점유율 등 고객 관련 성과를 본다. 틀린 표현은 고객 관점을 가장 미래지향적인 기반으로 보는 점이다. 올바르게는 고객 관점은 학습과 성장 및 내부 프로세스 개선의 효과가 시장에서 드러난 성과를 확인하는 관점이다.

NoteBase

**선지 ③**

X. 내부 프로세스 관점은 생산, 품질, 납기, 혁신 등 내부 활동의 효율성과 경쟁력을 본다. 틀린 표현은 내부 프로세스 관점을 다른 모든 관점을 이끄는 최상위 원동력으로 보는 점이다. 올바르게는 내부 프로세스 관점은 학습과 성장 관점이 강화한 역량이 실제 업무절차 개선으로 연결된 중간 단계 관점이다.

**선지 ④**

O. 학습과 성장 관점은 구성원의 역량, 정보자산, 조직문화 같은 무형자산을 축적하는 관점이므로 가장 미래지향적이다. 이 관점이 강화되어야 내부 프로세스가 개선되고, 그 결과 고객성과와 재무성과가 뒤따르므로 다른 3가지 관점의 성과를 이끄는 원동력으로 본다.

**오답 포인트**

BSC의 네 관점을 모두 중요하다고만 외우면 재무적 관점이나 고객 관점을 정답처럼 착각하기 쉽다. 이 문항의 함정은 '성과를 측정하는 관점'과 '그 성과를 만들어 내는 선행역량의 관점'을 구분하지 못하게 만드는 점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BSC에서 무엇이 최종 결과인지와 무엇이 그 결과를 만들어 내는 선행요인인지를 먼저 구분하면 된다.
미래지향성, 역량축적, 인적자원, 정보시스템, 조직문화 같은 표현이 보이면 학습과 성장 관점을 우선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BSC는 학습과 성장 → 내부 프로세스 → 고객 → 재무의 흐름으로 기억하면 된다.

NoteBase

**문 18. 영국해상보험법(MIA)상 현실전손(actual total loss)에 해당하는 손해만을 모두 고르면?**

ㄱ. 피보험자가 보험의 목적물에 대한 소유권을 박탈당하고 이를 회복할 수 없는 경우
ㄴ. 보험목적물인 선박이 담보위험에 의하여 심하게 손상되었을 경우에 그 손상을 수리하는 비용이 수리 후의 선박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ㄷ. 해상사업에 종사하는 보험목적물인 선박이 행방불명이 되고 상당한 기간 경과 후까지 그 소식을 모를 경우
ㄹ. 보험목적물인 화물이 손상되었을 경우에 수리하는 비용과 그 화물을 목적항까지 수송하는 비용이 도착시의 화물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① ㄱ, ㄷ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ㄴ, ㄹ

**정답 1번**

**쟁점**

이 문제는 영국해상보험법상 현실전손과 추정전손을 구별할 수 있는지를 묻는 문제이다.

**용어 풀이**

현실전손(actual total loss)은 보험목적물이 멸실되거나 본래의 성질을 잃었거나 피보험자가 이를 회복 불가능하게 상실한 경우를 말한다.
추정전손(constructive total loss)은 실제로 완전히 멸실된 것은 아니지만, 구조·수선·회복 비용이 목적물의 회복가치를 넘어 사실상 포기하는 편이 합리적인 경우를 말한다.

**핵심 구분**

현실전손은 목적물의 멸실 또는 회복 불가능한 박탈 자체가 발생한 경우이다. 반면 추정전손은 목적물이 남아 있어도 수리·회복·운송 비용이 그 경제적 가치를 초과하여 포기하는 경우이다.
따라서 행방불명 선박은 현실전손으로 추정되지만, 선박 수리비가 수리 후 가액을 넘거나 화물의 수리비와 목적지 운송비가 도착가액을 넘는 경우는 추정전손에 해당한다.

NoteBase

### 선지별 해설

1번 O: ㄱ과 ㄷ은 모두 현실전손에 해당하므로 정답이다. ㄱ은 피보험자가 보험목적물을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박탈당한 경우이고, ㄷ은 상당한 기간 동안 소식이 없는 행방불명 선박으로서 현실전손으로 추정된다.
2번 X: ㄱ은 맞지만 ㄹ이 틀려서 오답이다. 틀린 표현은 ㄹ을 현실전손에 포함한 부분이다. 올바르게는 화물의 수리비와 목적지까지의 운송비가 도착 시 화물가액을 초과하는 경우는 추정전손이다.
3번 X: ㄷ은 맞지만 ㄴ이 틀려서 오답이다. 틀린 표현은 ㄴ을 현실전손에 포함한 부분이다. 올바르게는 선박의 수리비가 수리 후 선박가액을 초과하는 경우는 추정전손이다.
4번 X: ㄴ과 ㄹ이 모두 틀려서 오답이다. 틀린 표현은 선박 수리비 초과와 화물 수리비·운송비 초과를 현실전손으로 본 부분이다. 올바르게는 두 경우 모두 경제적 회복가치가 없어 포기하는 추정전손이다.

### 오답 포인트

수험생은 전손이라는 말만 보고 현실전손과 추정전손을 한 범주로 묶기 쉽다. 이 문항의 함정은 ㄴ과 ㄹ처럼 목적물이 남아 있으나 경제성이 없어 포기하는 경우를 현실전손처럼 보이게 만든 데 있다.

###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먼저 완전 멸실·성질 상실·회복 불가능한 박탈인지 확인한다. 그다음 목적물은 남아 있지만 수리·회복·운송비용이 가치보다 큰지만 보면 추정전손과 현실전손을 바로 가를 수 있다.

### 암기 포인트

현실전손은 없어지거나 되찾을 수 없는 경우이고, 추정전손은 남아 있어도 고칠수록 손해인 경우이다.

NoteBase

**문 19. 딤자(Dymsza)가 제시한 글로벌 기업의 조직형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기능별 조직은 제품의 종류가 적고 생산이나 판매지역의 범위가 좁을 때 채택하는 형태이다.

② 제품별 조직은 제품의 종류가 다양하고 성격과 기술 등에 있어서 차이가 많은 경우 채택하는 형태이다.

③ 지역별 조직은 생산이나 판매 등이 여러 지역에서 이루어지고 여러 지역의 특성이 다양한 경우 채택하는 형태이다.

④ 매트릭스 조직은 기업의 해외영업활동이 확대됨에 따라 기업조직 내에 다른 제품사업부와 같이 하나의 독립된 사업단위로 운영하는 형태이다.

**정답 4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딤자(Dymza)가 제시한 글로벌 기업의 조직형태를 기능별·제품별·지역별·매트릭스 조직으로 구분하고, 각 조직이 적합한 상황을 연결할 수 있는지를 묻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기능별 조직은 생산·마케팅·재무 같은 기능을 기준으로 묶는 형태이므로 제품 수가 적고 활동 범위가 좁을 때 효율적이다.
제품별 조직은 제품군별로 사업을 나누는 형태이므로 제품 종류가 많고 제품 간 성격과 기술 차이가 클 때 적합하다.
지역별 조직은 지역시장별로 조직을 나누는 형태이므로 여러 지역의 수요와 환경 차이가 클 때 현지 대응에 유리하다.
매트릭스 조직은 제품과 지역 또는 기능을 동시에 축으로 두는 이중 지휘체계이다.
해외사업을 별도의 독립 사업단위로 두는 형태는 매트릭스 조직이 아니라 국제사업부 조직이다.

**선지별 해설**

① O: 기능별 조직은 기능 전문화를 통해 효율을 높이는 구조이므로 제품 종류가 적고 생산이나 판매 지역의 범위가 좁을 때 채택하기 쉽다.
② O: 제품별 조직은 제품군마다 책임을 분리하는 구조이므로 제품의 종류가 다양하고 제품별 성격과 기술 차이가 큰 경우 적합하다.
③ O: 지역별 조직은 지역 단위로 권한을 나누어 현지 시장 특성에 대응하는 구조이므로 생산이나 판매가 여러 지역에서 이루어지고 지역 특성이 다양한 경우에 맞다.
④ X: 틀린 부분은 '매트릭스 조직은 … 하나의 독립된 사업단위로 운영하는 형태'라는 표현이다. 해외영업활동 확대에 따라 해외부문을 다른 제품사업부와 병렬의 독립 사업단위로 두는 것은 국제사업부 조직에 대한 설명이다. 매트릭스 조직은 제품과 지역 또는 기능을 동시에 교차시켜 이중 보고체계로 운영하는 형태이다.

NoteBase

**오답 포인트**

국제사업부 조직과 매트릭스 조직을 혼동하기 쉬운 문항이다. '독립된 사업단위'라는 표현은 해외사업을 별도 사업부로 떼어내는 국제사업부 조직의 표지이고, 매트릭스 조직의 핵심 표지는 두 기준이 동시에 작동하는 교차 구조와 이중 지휘체계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조직형태 문제는 먼저 무엇을 기준으로 부서를 나누는지 확인하면 된다. 기능으로 나누면 기능별 조직, 제품군으로 나누면 제품별 조직, 지역시장으로 나누면 지역별 조직, 두 기준을 동시에 교차시키면 매트릭스 조직, 해외사업만 별도 사업부로 떼어내면 국제사업부 조직으로 판단된다.

**암기 포인트**

기능은 업무 기준, 제품은 상품 기준, 지역은 시장 기준, 매트릭스는 이중 기준, 국제사업부는 해외사업 독립 기준이다.

NoteBase

**문 20. 해외직접투자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독점적우위이론에서 우위요소는 특정기업만이 지니고 있는 특유의 우위이므로 해외시장 진입장벽을 극복할 수 있게 한다.

② 과점적이론은 동일산업에 속한 기업들이 특정 투자대상국에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현상인 밴드왜건효과(bandwagon effect)를 설명할 수 있다.

③ 제품수명주기이론에서 제품이 성장기에 접어들면 제품이 표준화되고 가격경쟁력이 관건이 되기 때문에 임금이 낮은 개발도상국으로 생산시설을 이전하게 된다.

④ 내부화이론은 시장을 통해 기업 외부에서 이루어지는 해외사업 거래를 내부화하기 위하여 해외직접투자를 한다는 것이다.

**정답 3번**

**출제 포인트**

해외직접투자이론별 핵심 설명을 구분하고, 특히 제품수명주기이론에서 생산이전이 일어나는 제품 단계가 무엇인지 판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독점적우위이론은 기업이 가진 고유한 우위자산으로 해외 진입의 불리함을 극복한다는 이론이다.
과점적이론은 경쟁기업의 행동에 대응하여 같은 산업 기업들이 연쇄적으로 해외투자에 나선다는 이론이다.
제품수명주기이론은 신제품 도입기에서 선진국 생산이 시작되고, 성숙기로 갈수록 제품이 표준화되어 비용절감형 해외이전이 나타난다는 이론이다.
내부화이론은 시장거래에 따르는 불완전성과 거래비용을 줄이기 위해 기업이 외부거래를 기업 내부로 흡수하며 해외직접투자를 선택한다는 이론이다.

NoteBase

### 선지별 해설

① O
독점적우위이론의 핵심은 특정 기업만이 보유한 기술, 브랜드, 경영능력 같은 기업특유우위이다. 이런 우위가 있어야 외국기업으로서의 불리함과 해외시장 진입장벽을 감수하고도 직접투자가 가능하므로 옳은 설명이다.

② O
과점적이론은 소수 대기업이 서로의 전략에 반응하는 과점시장 구조를 전제로 한다. 한 기업의 해외진출 뒤에 경쟁기업들이 같은 국가나 인접 시장으로 따라 들어가는 현상은 밴드왜건효과로 설명할 수 있으므로 옳다.

③ X
틀린 부분은 "성장기에 접어들면 제품이 표준화되고 가격경쟁력이 관건이 되기 때문에"이다.
제품수명주기이론에서 제품 표준화와 저임금국으로의 생산이전은 주로 성숙기 이후에 나타난다. 올바르게는 "제품이 성숙기에 이르러 표준화되고 가격경쟁이 중요해지면 저임금 개발도상국으로 생산시설을 이전하게 된다"이다.

④ O
내부화이론은 라이선스나 외주 같은 시장거래로 처리하면 기술유출 위험이나 거래비용이 커질 수 있으므로, 이를 기업 내부거래로 전환하기 위해 해외직접투자를 한다고 본다. 시장을 통한 외부거래를 내부화한다는 설명이므로 옳다.

### 오답 포인트

제품수명주기이론에서 수험생이 가장 많이 헷갈리는 지점은 성장기와 성숙기의 구분이다. 성장기는 수요확대와 생산증가의 단계이고, 표준화와 비용절감형 해외이전은 성숙기 이후의 특징인데 ③은 이 둘을 뒤바꾸어 놓았다.

###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해외직접투자이론 문제는 먼저 이론별 결정축을 잡으면 빠르게 정리된다. 독점적우위는 기업특유우위, 과점적이론은 경쟁기업 추종, 제품수명주기이론은 제품 단계 변화, 내부화이론은 시장거래의 내부 전환으로 구분하면 된다. 이후 선지의 단계명이나 원인을 바꾸어 놓은 표현이 있는지 확인하면 된다.

### 암기 포인트

독점적우위는 기업특유우위, 과점적이론은 따라가기, 제품수명주기이론은 성숙기 표준화, 내부화이론은 외부거래의 내부전환이다.

NoteBase